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0408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A종교단체

피고B종교단체

변론 종결2017. 6. 22.

판결 선고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443호, 2011. 5. 23. 접수 제16353호로 한 B종교단체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1)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0. 7. 28. 접수 제27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3. 5. 1. 접수 제165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0. 12. 11. 접수 제450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3. 6. 30. 접수 제28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위

- 1) ① 이후 별지 목록 제1, 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0.자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443호로 "종단 A종교단체"의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는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 ② 2011. 5. 23. 접수 제16353호로 "B종교단체"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C'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D'로 변경하는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 2) ① 또한 별지 목록 제3, 4,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0.자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443호로 "종단 A종교단체"의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 ② 2011. 5. 23. 접수 제16353호로 "B종교단체"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C'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D'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유무

-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3, 2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를 종지로 하고, 인간개조,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정관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F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등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 유무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총유재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소 제기에 관한 원고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9조 제4호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8. 12.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에게 편취당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전국 각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표자 G은 원래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종단 H의 분열을 기회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별도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 A종교단체" 즉 원고에서 "B종교단체" 즉 피고로 명의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등기로서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종단 A종교단체"에서 "B종교단체" 즉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종단

A종교단체이 2007. 5. 10.경 임시총의회에서 단체의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9. 20.경 원고의 대표자 F 외 14인을 피고에서 제명 및 제적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 F은 2007. 5. 10.자 종단 A종교단체의 임시총의회에서 부의장으로서

단체의 명칭을 위와 같이 "B종교단체"로 변경하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로부터

제명 및 제적당한 원고의 대표자 F 외 14인은 201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584호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6. 6. 30. 위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F은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종단 A종교단체은 그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원고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종단 A종교단체과는 달리 2015. 11.경 피고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별도로 조직한 종교단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호

판사임섫별

판사고석범

별지